

설명회 제04호

최근 한계기업 및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심사·감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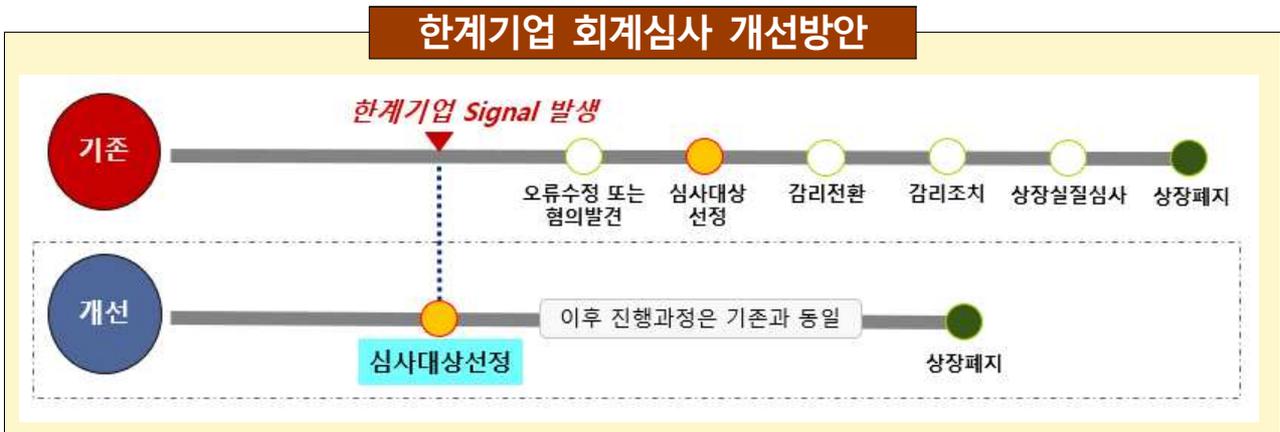
2025. 7. 10.



회계감리1국

I 그간의 경과 (~'24년 이전)

- **(한계기업)** 경기부진 장기화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장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계기업 조기퇴출을 위한 회계심사방안 마련(’24.11월)
 - 한계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사대상 선정요건을 마련하고,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 심사에 착수
 - *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 보도자료*를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계획을 시장에 안내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에게 충실한 감사절차 수행을 당부
 - * (’24.11.26) 선제적 회계감리를 통해 한계기업을 조기 퇴출시키겠습니다.



- **(상장예정법인)** 금감원과 한공회가 나누어 수시로 표본심사를 실시
 - '21~'24년 합산 기준으로 금감원의 심사대상 비중*은 10.7% 수준
 - * 한국거래소에서 통보해 온 상장추진 기업수 기준
 - 금감원은 ①자산 1조원 이상 전체와 ②나머지 중 회계분식위험도·재무비율 등을 감안하여 표본선정한 회사에 대해 심사를 실시

구 분	금감원	한공회
심사대상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사업보고서 비제출회사 중 자산 1조원↑	사업보고서 비제출회사 중 자산 1조원↓
소관비중	10.7%	89.3%

II 향후 심사·감리계획 ('25년 이후~)

◆ 한계기업 및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선제적 회계심사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진입·퇴출 관리 → **선진화된 자본시장 확립**

1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규모를 '24년의 250% 수준으로 확대하여 회계감독 취약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아울러,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가공 매출 인식, 손상 미인식 등 회계부정 적발시 신속한 감리를 통해 자본시장 조기 퇴출 유도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경우 자본시장 조사부서 등 유관 부서와 공유하여 종합적으로 엄정하게 대응

[참고] 한계기업 징후 상세내용(예시)

순	주요 내용
①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有
②	수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 영업이익 < 이자비용
③	재무지표(매출액, 세전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률 등)가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근접
④	의견거절을 받은 후, 상장폐지 모면을 위해 분식을 할 가능성

2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 강화

- 상장예정기업(IPO)에 대한 금감원의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기존자산 1조원 이상 → 변경5천억원 이상)하는 등 사전적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
 - 또한, 상장 직후 주가·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규모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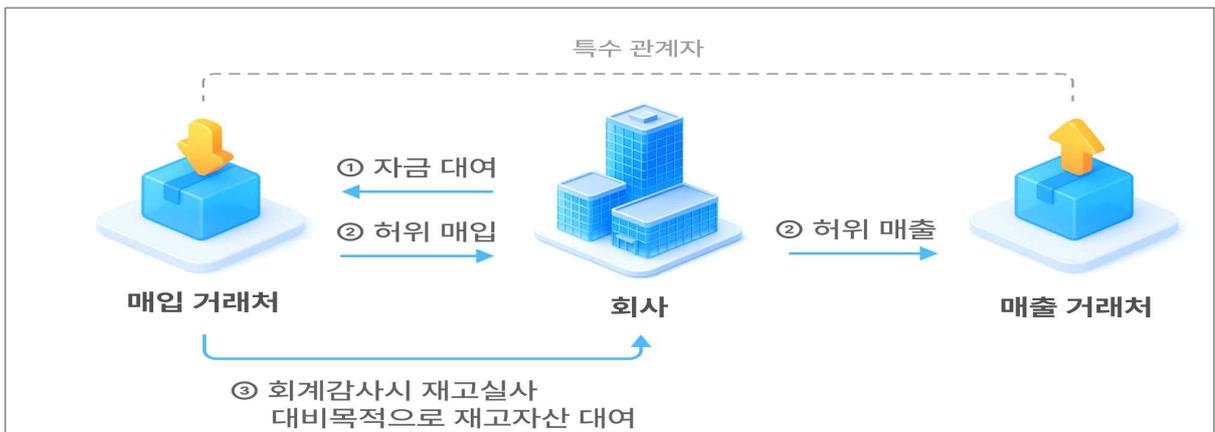
* 현재 이익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성을 인정받아 상장된 기업도 주가관리 등의 목적으로 회계분식을 할 가능성

Ⅲ 감리 지적 사례

사례1 | 한계기업의 조기퇴출 유도

◆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한계기업에 대하여 거래소 통보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 (고의 위반)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C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였음
 - 매출처와 매입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고, 상품 이동도 없어 회계기준 상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또한, 회사는 허위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일에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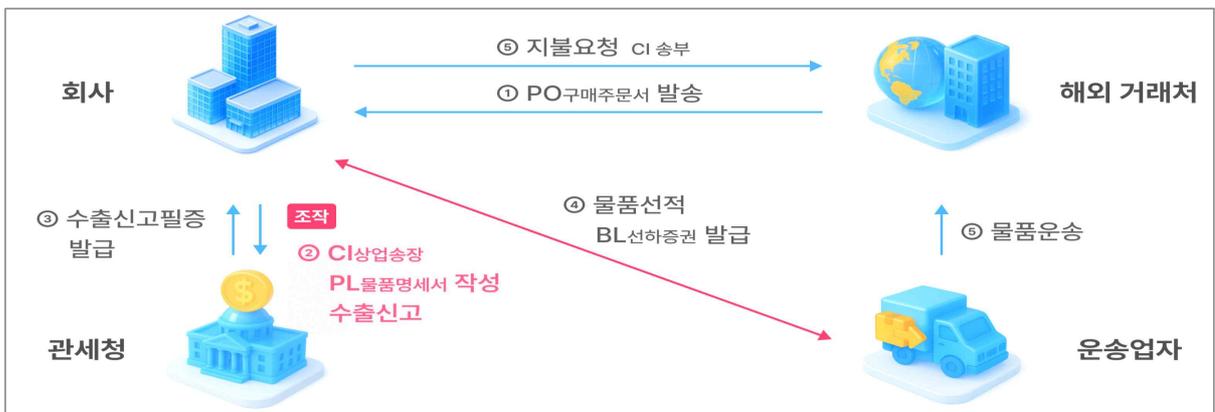


- **(지적내용)**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시켜 거래의 실질은 자금 **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매출** 등을 인식하였고,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 **(유의사항)** 투자자는 연속 영업손실 등에 직면한 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등의 회피를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음을 염두하고,
 -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되어 거래소의 **거래정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 감사인은 기업이 **새로운 상품 매출거래**를 인식하는 경우, 거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

사례2 | IPO 예정기업의 회계분식에 대한 중조치

◆ IPO를 목적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한 기업에 대하여 회사·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조치**로 제재 (고의 위반)

- (사실관계)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릴 유인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회사는 상업송장(CI) 및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 높은 단가를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하거나,
 - 검수 또는 선적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계상
 - 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해외 매출채권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한 행위도 有



- (지적내용)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의 조작으로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을 계상하였고, 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
- (유의사항) 감사인은 IPO 과정에서 제시되는 **실적**의 분식 가능성에 유의하고, 회사가 **외부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위험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감사 의견**에도 반영 고려
 - 한편, 회사는 외부감사 방해행위가 “위법동기 **고의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관련자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도 가능함에 유의

①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및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 ✓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신규상장 요건 등을 고려하여 회계부정·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계획·수행해야 하며, 회사가 제시한 증빙·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를 통해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는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

②

한계기업과 상장예정기업의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한계기업은 감사인지정 회피, 상장예정기업은 높은 공모가 산정 등을 위한 고의적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으므로 특히 이러한 기업의 매출 급증, 재고자산 이전, 손상 미인식, 통상적 이지 않은 회계처리의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

*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 특히 매출액 등에 유의

③

부정행위 보고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법령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발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감사인의 통보내용에 대한 회사의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확인해 주시길 당부